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4.

발 의 자 : 박성훈 · 송언석 · 박충권
김기웅 · 김위상 · 김성원
김승수 · 서명옥 · 윤영석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관세법」은 관세의 부과·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,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특히,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·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.

이에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,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,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, 입·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

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116조의7 신설 등).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신용정보집중기관,”을 “신용정보집중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”으로 한다.

제1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6조의7(고액·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)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제1항제1호, 「국세징수법」 제114조제1항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·상습체납자(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고액·상습체납자”라 한다)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세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.

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통보하고,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

따라 고액·상습채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·상습채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41조제1항 중 “수량 및 가격과”를 “수량·가격,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액·상습채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품 또는 탁송품을 반입하거나,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신청 또는 사용하거나, 보세판매장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신 설>

제116조의7(고액·상습채납자의
소액면세 배제 등) ① 관세청
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
제1항제1호, 「국세징수법」 제
114조제1항 및 「지방세징수
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
이 공개된 고액·상습채납자
(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
에서 “고액·상습채납자”라 한
다)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
및 제96조제1항제1호·제2호에
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
4조 및 제96조제1항에도 불구
하고 그 관세를 면제하여서는
아니 된다.

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
액·상습채납자에 대하여 개인
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
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
유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.

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
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운
영인에게 고액·상습채납자의
명단을 통보하고, 관세청장이
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·상습
채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

제241조(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) ① 물품을 수출·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·규격·<u>수량 및 가격</u>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~ ⑥ (생략)	<u>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·상습채납자가 반입하는 타송품에 대해서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제241조(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) ① ----- ----- -----<u>수량·가격,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</u> 및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